

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

① 공사명						
② 대지위치						
③ 용도 및 구조	용도				구조	
④ 규모	건축면적	m <sup>2</sup>	연면적	m <sup>2</sup>	지상층수	
⑤ 피난시설	확인내용		관련규정		적합여부	
	직통계단의 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피난·특별피난·옥외피난계단의 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옥상광장 등의 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방화구획 등의 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계단설치기준 및 구조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거실의 반자·채광·환기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소방관진입창의 설치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층간 바닥 구조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	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		「건축법」 제49조		[ ] 적합 [ ] 부적합 [ ] 해당 없음	
⑥ 그 밖의 사항						
⑦ 종합의견						
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)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					년	월
					일	
건축주					(서명 또는 인)	
확인자: 건축사					(서명 또는 인)	
주 소:						
연락처:						